#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57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 오기형 · 최기상 · 한민수

정일영 · 최민희 · 김문수

박해철・김 윤・김영환

이광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.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되고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 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.

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(안제40조, 제40조의2).

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3항제1호 중 "발전"을 "공동체 발전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- 2. 자치회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 렴 및 읍·면·동장과 협의에 관한 사항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자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 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주민자치회의 구성) ① 자치회에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조

례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,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수 있다.
- ③ 자치회의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, 주민설명회·우편송달·온라인 또는 홍보 행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- ⑥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 위원의 공개 모집 및 선정 절차 등 그 밖의 주민자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 정규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. 다만, 주민자치 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	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	③
무를 수행한다.	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	1
및 <u>발전</u> 을 위한 사항	<u>공동체 발전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자치회 구역 내 주민생활과
	밀접한 사무에 대한 주민의
	<u>의견 수렴 및 읍·면·동장과</u>
	협의에 관한 사항
<u>2.·3.</u> (생 략)	<u>3.•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
	같음)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	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
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	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
의 장이 위촉한다.	<u>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</u>
	<u>할 수 있다.</u>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	⑤ 자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
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	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
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	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
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	성·운영할 수 있다.
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	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
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	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 운영

로 정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 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및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・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제40조의2(주민자치회의 구성) ① 자치회에는 대표자 1명을 포함 한 조례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,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,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의 위원은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8 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치회 위원

- 으로 선정될 수 없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1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, 주민설명회·우편송 달·온라인 또는 홍보 행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- ⑥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⑦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

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 위원 의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 등 그 밖의 주민자치회 구성에 필 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